

2023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경기북부 기술코칭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

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도입을 및 기술애로해소를 위한 「기술코칭」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9월 12일

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

1 공고개요

가. 사업목적

- 경기북부기업 문제 해결 및 사업화 후속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
- 기술이전/도입 희망기업에 기술탐색 기회 부여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

나. 공고개요

- 사 업 명: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코칭 사업
-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~ 2023.09.22.(금)
- 지원내용: 전문가 코칭 비용 2,000천원 지원(기업자부담 없음)
- 지원대상: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
 - ※ 중소기업: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
 - ※ 경기북부: 가평군, 연천군, 고양시 구리시, 남양주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의정부시, 파주시, 포천시

2 지원내용

가. 지원분야

- 지원개요: 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및 기술수요 매칭을 위한 전문가 코칭 지워
- 사업 수행 기간: 2023.09 ~ 2023.11(약3개월)
- 지원분야

기술코칭 신청분야							
■ 기술도입	■ 기술개발	■ 지식재산권		■ 혁신시제품			
■ 기계	■ 시험분석/인증	■ 소재/부품	■ 가구	■ 식품			
■ 바이오/화학	■ 섬유	■ ICT/IT	■ 디자인	■ 마케팅			
■ ESG 경영	■ 사업전략	■ 기타(자율작성	성)				

- 사업 선정 후 신청분야 중점 기관 전문위원 POOL을 활용한 매칭 실시

나. 지원자격

- 경기북부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
 - ※ 공장 소재지 기준 참여, 공장 미등록 기업은 본사 소재지로 신청
 - ※ 본 사업 신청 당시 경기북부에 소재하던 본사 또는 공장등록지를 본 사업 선정 이후, 경기북부 외의 지자체로 이전 시, 선정을 취소함(단, 공장등록 경기북부 소재 시, 선정 유효)

다. 지원 기업 선정 및 평가기준

- 지원기업 선정 방법
 - 외부위원 5명 이상의 평가로 선정하며, 선정기업은 평균 70점 이상 획득 하여야 함
 - ※ 단,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선정이 취소되며,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및 자발적인 포기의사 표명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○ 선정평가표 및 배점(안)

평가지표	평가기준		l점	배점
		탁월	30	
사업의	o 본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?	우수	28	
필요성	(지원사업 이해도 및 참여의지)	보통	26	
(30점)	o 본 사업 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가?	미흡	24	
		불량	22	
코칭사항의	코칭사항의 구체성 (40점) o 코칭 요청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? o 기술코칭으로 해결가능한 애로사항인가?	탁월	40	
		우수	35	
구체성		보통	30	
(40점)		미흡	25	
		불량	20	
		탁월	30	
사업수혜	사업수혜 시급성 o 해당 애로사항에 대한 코칭이 시급한가?	우수	28	
시급성		보통	26	
(30점)		미흡	24	
		불량	22	

3 신청안내 및 지원절차

가.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3. 9. 22(금) 17:00

○ 접수방법 / 접수처: 이메일 접수 / <u>ipteam@gdtp.or.kr</u>

○ 제출서류 : (재)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://gdtp.or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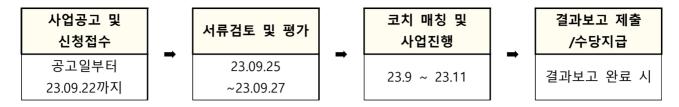
(알림마당 ⇒ 사업공고)에서 서식 다운로드

구분	제출서류	비고	
필수(붙임1)	· 사업신청서 및 도입희망기술조사서	HWP, PDF 각 1부	
필수	·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3개월 이내 발급분)	1부	
필수	·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급분)	1부	
필수	· 공장등록증명원(해당시)	1부	
필수	· 중소기업확인서(공고일 기준 유효분)	1부	

○ 문 의 처 : 지식재산팀 이소희 주임, 박은애 주임 (T.031-539-5036~7)

※ 문의시간 : 평일(09:30~11:30, 13:30~17:30)

나. 진행절차



4 유의사항

- 지원제외 대상(접수 마감일 기준)
- 산업체가 부도업체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 이행이 확인된 경우(선정기업대상 추가 확인 예정)
- 부도,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
-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타사업과의 중복 지원 조회 시 이미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